

석유화학시설로부터 생산되는 등유대체용 제품에 대한 과세 건의

- 대한석유회회 -

이 내용은 지난 7월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건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편집자주>

○ 최근 일부 석유화학업체에서는 석유화학제품 제조 공정 중 생산되는 부산물을 보일러등유 대체용 연료로 사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런데, 동 부산물은 석유화학사에서만 생산되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화학시설에서도 공히 생산되는 제품이며, 정유사는 이를 바로 판매하지 않고 정유공장으로 이체하여 석유사업법상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석유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정유사는 등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특소세:60W/ℓ, 교육세:9W/ℓ, 판매 부과금:20W/ℓ) 납부 의무를 지고 있으나, 석유화학사의 경우 동일한 제조공정인 Splitter를 통해 생산된 제품임에도 단지 석유정제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유사에게 부과되고 있는 다양한 의무가 현재까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더구나, 해당회사측은 이들 연료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근거로 "일반 경유나 등유보다 열량이 높고 기존 보일러등유보다 황성분이 낮으며, 보일러등유 대체용의 우수한 연료유" 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홍보·판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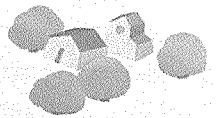
○ 이처럼 동일한 용도(즉, 동일 판매시장)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원천별·사업자별로의 무가 차별적으로 부과된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

내지 공정경쟁 기반조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므로 일관된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등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특별소비세법령 개정을 귀부에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 : 특별소비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 1부 "끝" 

용어해설



· 웹시족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를 얻거나 쇼핑을 즐기는 주부층이 늘어 나면서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른바 '웹시족'이 그것. 웹시족이란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생활 정보를 얻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들을 일컫는 말로 웹(Web)과 미시(Missy)의 합성어다. 이들은 육아 쇼핑 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을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정보 지향적 주부층이다. 웹시족이 늘면서 이들을 일컫는 용어를 회사명으로 내세운 웹사이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통업체는 주부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웹시족 붙잡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첨 부]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의 건 사 유
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 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 하여는 리터당 691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 여는 리터당 160원 다. <u>등유</u> 에 대하여는 리터당 60원	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 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 여는 리터당 691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 여는 리터당 160원 다. <u>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u> 에 대하 여는 리터당 60원	○ 동일한 제조 공정을 거쳐, 동일한 용도 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생산원천 별·사업자별로 균등한 의무를 부과함 으로써 조세의 형평성 유지 및 공정경쟁 기 반조성 차원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의 건 사 유
1. ~ 6. (생 략) 7. 법 제1조 제2항 제4호 해당물품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 (2)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 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경 유 다. <u>등 유</u>	1. ~ 6. (생 략) 7. 법 제1조 제2항 제4호 해당물품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 (2)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 제품을 말한다.) 나. 경 유 다. <u>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u> (1) <u>등 유</u> (2) <u>등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탄화수소유중 등유를 대체하 여 연료유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산물의 생산자가 자체 적으로 소비하거나 석유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 는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자에게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u>	○ 등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규정 하기 위한 것임.